

예산총칙

2021년도 추경 4 회 수정 1 차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06,621,126	18,198,634
일반회계	521,892,662	15,656,780
특별회계	84,728,464	2,541,854
공기업특별회계	46,119,125	1,383,57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6,119,125	1,383,574
기타특별회계	38,609,339	1,158,280
주택사업특별회계	12,200	366
의료보호특별회계	375,945	11,27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00,000	15,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95,000	14,850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11,176	30,335
수질개선특별회계	34,939,864	1,048,196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	1,275,154	38,25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조서] "별첨"과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조서] "별첨"과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17,37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0,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2021년 회계연도중에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